

1. 개정이유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 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합 리화 등 국민의 편의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보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 기관 추가(안 제11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 에서 한국환경공단을 추가 변경함

나.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운영 기관 추가(안 제20조)

-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밀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지원,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등의 기능을 추가함

다.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기타수질오염원 적용범위 확대(안 별표 1)

- 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의 수산물 범위가 채취·포획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로 세척만하는 해조류·갑각류·조개류만 해당하였으나, 전체 수산물로 확대 적용
- 라. 폐수배출시설 분류에서 폐기물처리업체 정수시설 제외(안 별표 4)
- 폐기물처리업체의 정수시설 발생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분류에서 제외
- 마. 폐수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위탁처리시 폐수처리 실적 보고의무 면제(안 별표 14)
- 위탁처리시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보고의무 면제
- 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명확화(안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2)
-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아닌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은 생태독성 적용 제외
- 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명확화(안 제37조제3항, 제52조의3제2항, 제90조제3항, 제90조의2제3항, 서식 12·13·23의3·41·43)
- 각종 인허가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통하여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정하고 이용가능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
- 아.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명확화(안 별표 22 비고10)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에 한하여 조업정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을 적용토록 함

자. 대표자 작성 시 법인의 경우 직함 기재 가능하도록 변경(안 서식 제33호, 제37호, 제40호의2호)

- 잦은 변경신고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허가 시 법인은 대표자를 직함으로 작성토록 변경

차. 단위 일치, 용어 변경 및 오기 정정 등 미비점 정비(안 서식 41, 42, 안 제91조의2제5호, 안 서식 46, 안 서식 1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제3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2항(중전의 제3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9호”로 한다.

8. 할당된 오염부하량,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 등에 대한 정밀평가, 원인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지원

9.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및 통계 자료의 작성

제37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 서류를”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로 한다.
제41조제1호 단서 중 “제6호”를 “제13호”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 센터”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52조의3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제90조의2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제91조의2제4항제5호 중 “폐기물”을 “폐수”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테이프·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을 “전산에 의한”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라목 중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을 “수산물을 포획 또는”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78)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
|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로서 정수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2호 중 “해당 사업장”을 “폐수배출시설”로, “유입시키는”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제42조제3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0 제2호다목1)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하고, 같은 란 1) 단서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6)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 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 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한 경우				
---	--	--	--	--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0호 중 “따른”을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비고 제2호 중 “7)”을 “8)”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5)”를 “6)”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해당서류”를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해당서류”를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을 “사업자
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개인의 경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류”를 “서류(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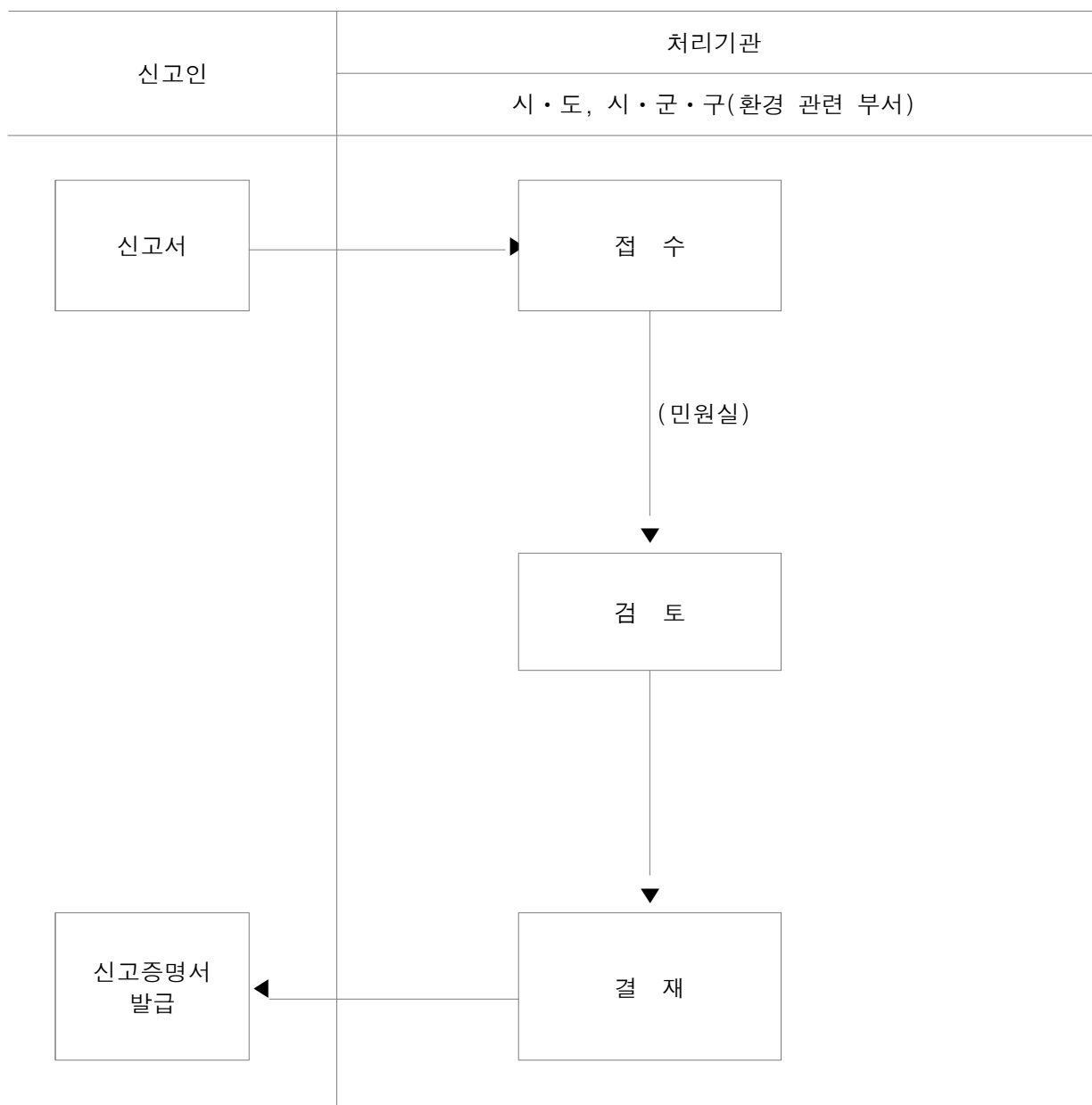
(뒤쪽)

작성요령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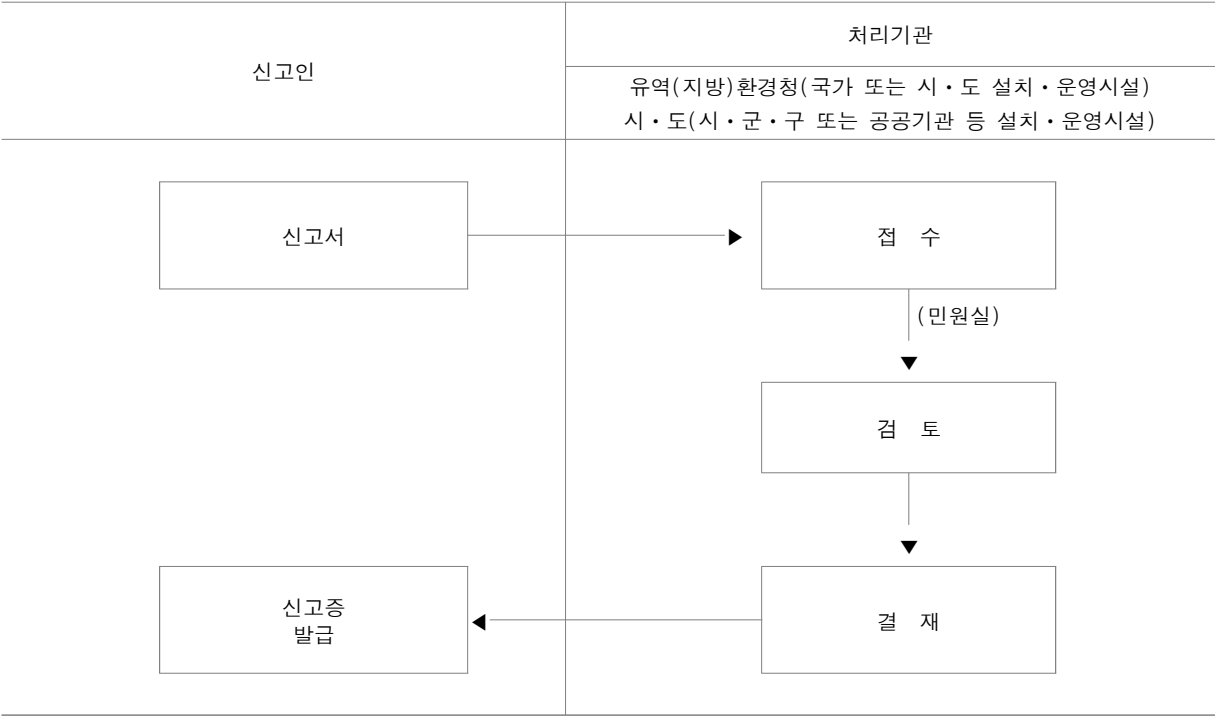
(뒤쪽)

작성요령

성명(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 년 월 일	설치완료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재이용시설					
시설명	규격	대수	시설명	규격	대수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대상 폐수		폐수처리능력	($\frac{m^3}{일}$ $\frac{m^3}{시간}$)		
폐수처리방법					
시설명	규격	대수	시설명	규격	대수
폐수운반방법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에 따라 폐수 [] 수탁처리업 [] 재이용업

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사본”을 “사본(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앞쪽)

허가번호	폐수 [] 수탁처리업 허가증 [] 재이용업				
제 호					
① 사업장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사무실 주소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처리 또는 재이용 대상 폐수		⑥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능력 또는 재이용 시설의 처리능력		$\frac{\text{m}^3}{\text{일}}$ ($\frac{\text{m}^3}{\text{시간}}$)	
⑦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재이용시설					
시설명	규격	대수	시설명	규격	대수
⑧ 수질오염방지시설					
시설명	규격	대수	시설명	규격	대수
⑨ 폐수처리방법					
⑩ 폐수운반방법					
⑪ 허가조건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 [] 수탁처리업 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재이용업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43호서식 신청인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상호 변경 시)”을 “사업자
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상호 변경 시)”로
하고, 같은 신청인 중 “사본”을 “사본(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제5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앞 쪽)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결재	환경기술인	부서장	공장장	대표자

년 월 일 요일

날씨:

온도:

1. 폐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시간대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대별 근무자 직·성명	※ 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3.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구분	항목	전일 지침 (m³)	금일 지침 (m³)	사용량 (m³/일)	검침 시간대	구분	항목	전일 지침 (m³)	금일 지침 (m³)	배출량 및 사용량(m³/일)
계							폐수발생량			
상수도	1호						폐수배출량			
	2호									
공업용수	1호						냉각수량			
	2호									
지하수	1호						소모 (증발량)			
	2호									
하천수	1호						재사용량			
	2호									
해수 등 기타	1호						생활용수량			
	2호									

4. 슬러지의 발생량 및 처리량

슬러지발생량(m³)	처리량(m³)	보관량(m³)	함수율(%)	보관장소

※ 함수율(%)란은 슬러지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슬러지를 적정하게 관리·처리할 수 있는 주기(월 1회 등)마다 작성합니다.

※ 슬러지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장소: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소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원료 또는 첨가제 등								
사용량(kg)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또는 공통어로 기재합니다.

6. 전력사용량

가동시간	사용량 (kWh)	금일 폐수 1m ³ 당 소모전력량(kWh/m ³)	검침시간	적산전력계 지침	참고사항

7. 약품사용량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량	비고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량	비고

8. 폭기조 운전상태(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pH	수온	DO	SV30	MLSS	SVI	폭기시간	주미생물상태

※ 미생물 관찰: 현미경 보유(600배율 이상), 주미생물상태는 양호 또는 불량으로 적습니다.

9.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10. 수질오염물질 측정내용

항목 구분	pH	BOD	TOC	SS	n-Hex	시아 (CN)	Cu				분석일
원폐수											
방류수											

※ 사업장에서 분석하는 경우 분석자명:

※ 분석을 위탁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11.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측정항목별 점검내용

항목 구분	pH	TOC	SS	T-N	T-P	유량계	시료채취조
청소상태							
시료도입[튜 빙(tubing: 배관)류] 상태							
시약류 주입상태							
센서류 작동여부							
소모품 교체							

12. 지도·점검을 받은 사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폐수처리방법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공통	사업명 또는 사업종류 (분류번호:)		
		영향 하천·호소 및 해양의 명칭		
		사업승인(허가 등) 기관		
	개발사업	공사개시(예정)일 년 월 일		사업준공(예정)일 년 월 일
		총 사업면적 m ²		개발면적 m ²
		①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공사 중 m ²		공사 후 m ²
		②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공사 중		공사 후
	사업장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부지 총면적 m ²
		③ 강우노출 면적 m ²		④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공통	⑤ 저감시설 종류		⑥ 규모 또는 용량
				⑦ 예상처리효율(%)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1. 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위치도를 포함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및 기준

1. 성명(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신고내용란 중 개발사업란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고, 사업장란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3. ①란은 공사 중, 공사 후의 토지이용 형태별 면적을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4. ②란은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 중, 공사 후에 관리가 필요한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모두 기록합니다.
5. ③란은 강우에 노출되어 비점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공정, 야적시설 등의 면적을 기록합니다.
6. ④란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모두 기록합니다.
7. ⑤, ⑥, ⑦란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중, 공사 후의 강우유출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구분하여 모두 기록하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모두 기록하며,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종류가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8. ⑥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에서 제시한 설계규모 및 용량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9. 첨부서류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저감시설의 예상처리효율, 산정근거 및 기준강우강도 등 설계인자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0. 처리기간: 10일(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20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② (생 략)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u>국립환경과학원장</u> 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 ----- ----- ----- <u>국립환경과학원장</u>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u>국립환경과학원장</u> 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 -- <u>국립환경과학원장</u> 또는 <u>한국환경공단</u> ----- -----, -- ----- ----- ----- ----- -----.
⑤ <u>국립환경과학원장</u> 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u>국립환경과학원장</u> 또는 <u>한국환경공단</u> ----- ----- ----- -----.

제17조(조치명령 등) ① ~ ④ (생략)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 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사업소

4. (생략)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② 조사·연구반의 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

제17조(조치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한국환경공단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

----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삭 제>

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
환경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할당된 오염부하량, 오염총량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
등에 대한 정밀평가, 원인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지원

9.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및 통계 자료의 작성

10. ----- 제9호-----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
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해야 한다.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
33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
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
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
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
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2. ~ 5. (생략)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 사업자등록증명(사업
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
정한다)---. ----- 사업
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을 -----.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

-----.

1. -----

---. -----

----- 제13호----- 지식
산업센터-----

-----.

2. ~ 5. (현행과 같음)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전산에 의한 방법-----
-----.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 ----- 사업자등록증명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 사업자등록증
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으로 한정한다)---. -----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증 사
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
처리시설 정기검사) ① ~ ③
(생 략)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
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
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5.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유
지관리계획서
6. (생 략)
- ⑤·⑥ (생 략)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
와 통합검사 등) ① (생 략)

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
(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
로 한정한다)----. -----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
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
처리시설 정기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폐수-----

6. (현행과 같음)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
와 통합검사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u>테이프·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u>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 <u>전산에 의한</u> ----- ----- -----. ③·④ (현행과 같음)
---	---